

1. 개정이유

외국 특허청과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09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서류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파일 특허증 도입, PCT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등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서류 반출 규정 신설(안 제120조의7)

외국 특허청 등과 업무협약 이행시 비밀·보안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나. 전자파일 특허(등록)증 도입 반영(안 제50조, 제50조의3, 제51조)

전자파일 특허(등록)증의 도입에 따라 발급(정정발급, 재발급 포함) 근거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안 제104조, 제106조의5)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납부시 납부서 제출 없이 수수료납부통지서에 부여된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특허증 또는 외국어특허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특허증(이하 “전자파일특허증”이라 한다)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50조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증 또는 외국어특허증을 전자파일특허증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을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50조제5항 및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을 전자파일특허증으로 발급신청

제5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발급된 특허증이 전자파일특허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신청

4. 제50조 제5항 및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어특허증을 전자파일특허증으로 발급신청

제10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6제2항 중 “출원서”를 “출원서, 보정서 또는 추가 신청서”로 한다.

제12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7(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서류 반출) ①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 이행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17조제3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우선권 증명서류
2. 선행기술 또는 특허분류에 관한 서류
3. 심사결과에 관한 서류

4. 그 외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나목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신청구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 구분】
-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 특허(등록)증 재발급
 -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전자파일)
 -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파일)
 - 등록원부 발급
 - 자료열람
 - 자료복사
 -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
 - 서류등본(초본) 발급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 구분 | 관련 규정 |
|---|---|
|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 |
|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전자파일),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파일),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 |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4호나목(1) 중 “특허(등록)증 발급,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을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전자파일),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파일)”로 하고, 같은 쪽 제7호가목 중 “특허(등록)증 발급,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을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전자파일),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파일), 특허(등록)증 발급,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로 한다.

록)증 재발급”을 “특허(등록)증 재발급, 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파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허(등록)증 정정발급(전자파일) 및 재발급(전자파일)의 경우에 **【e-메일】**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e-메일】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신청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 구분】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파일)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파일)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 구분 | 관련 규정 |
|--|---|
|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파일),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파일),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6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 |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파일) 및 재발급(전자파일)의 경우에 **【e-메일】**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e-메일】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정(보완, 정정, 추가)내용】**란에는 보정, 보완, 정정 또는 추가할 내용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필요에 따라 “별지 사용”이라고 적고 해당 내용을 별지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주장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보정내용】**란의 다음 행에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을 만들어 보정 전·후의 내용을 적으며,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추가내용】**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 출원일】**, **【선출원번호】** 및 **【선출원국가】**란을

만들어 추가되는 우선권주장 관련 내용을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신청시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우선권서류 송달】란을 만들어 신청 의사를 적습니다.

[예 1] 【보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예 2] 【추가내용】

【선출원 출원일】

【선출원번호】

【선출원국가】

[예 3] 【보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권서류 송달】 신청

별지 제41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카목 중 ““제8기재란 (i)~(v)의 각 선언서”란”을 ““제8기재란 (i)~(v)의 각 선언서”란 (제8기재란에 성명과 주소, 국적, 거주국을 적을 경우 반드시 영문을 병기하여야 함)”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1호다목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50조의3, 제51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신청

<신설>

②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발명자 등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재발급신청

4. 제50조제5항 및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을 전자파일특허증으로 발급신청

②-----

-----.

다만, 이미 발급된 특허증이 전자파일특허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어특

<신 설>

④ (생 략)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① (생 략)

② 대한민국에 제출한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

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신청

4. 제50조 제5항 및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어특허증을 전자파일특허증으로 발급신청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 다만,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출

원서에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의 취지를 적거나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생 략)

<신 설>

원서, 보정서 또는 추가 신청서

4. 그 외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
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
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